

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전시관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관람료 등의 개별 반환 사유와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명시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3항)
- 나.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2022. 10. 20. ~ 11. 9. (20일간)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5206(2022. 10. 13.)호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43725(2022. 10. 13.)호]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관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전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람료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-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규정과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-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관람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